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17
----------	-------

발의연월일 : 2024. 3. 26.

발 의 자 : 강민정 · 윤영덕 · 김남국
문정복 · 강득구 · 김의겸
양경숙 · 허숙정 · 이탄희
권인숙 · 김정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할 때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부모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인해 자녀의 양육을 아동복지 시설이나 다른 가정에 위탁한 경우 자녀가 한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지 않게 됨에 따라 국민주택 우선입주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지적받고 있음.

또한 한부모가족이 국민주택 입주를 신청하더라도 장기간 입주대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 자녀를 보육원 등에 맡기는 경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의 정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국민주택 입주 전에 일정 기간 함께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

는 임시주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한부모가족도 국민주택에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 입주를 신청한 한부모가족이 입주 전에 일정 기간 무상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임대”를 “임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한부모가족”을 “한부모가족(경제적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모 또는 부와 아동인 자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에 입주하기를 신청한 한부모가족이 국민주택 입주 전에 일정 기간 함께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 또는 임시거주시설(이하 “임시주택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임시주택등의 입주의 자격과 신청, 무상거주기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임시주택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u>한부모가족</u> 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등) ① ----- ----- ----- ----- <u>한부모가족(경제적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모 또는 부와 아동인 자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 ----.
<신 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에 입주하기를 신청한 <u>한부모가족이 국민주택 입주 전에 일정 기간 함께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 또는 임시거주시설(이하 “임시주택 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
<신 설>	③ 임시주택등의 입주의 자격과 신청, 무상거주기간 등에 필

<u><신 설></u>	<u>요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u> <u>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임시주택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	---